정보화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의 정보화 사업의 추진 및 정책결정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정보화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기능)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조정 한다.

1. 종합적인 정보화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
2. 정보화 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 및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
3. 정보화실무위원회 처리 결과 및 건의 사항 심의
4. 정보통신 윤리에 관한 사항
5.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

제 2 장 구성 및 임원

제 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추천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내외로 한다.

② 당연직 위원은 전산정보원장, 기획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으로 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8. 2. 28, 2018. 12. 12, 2020. 11. 12, 2021. 3. 9.)

③ 추천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, 관련분야의 교직원,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위원으로 한다.(개정 2020. 9. 8.)

제 4조 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전산정보원장으로 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8. 2. 28, 2018. 12. 12, 2021. 3. 9.)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 5조 (임기)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②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 6조 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.

③ 전산운영팀장을 간사로 한다.(개정 2015. 5. 1, 2021. 3. 9.)

제 7조 (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별도의 정보화 실무위원회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정보화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협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기본 기능으로 한다.

③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외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산정보원장이 겸한다.(개정 2015. 5. 1, 2018. 2. 28, 2018. 12. 12, 2021. 3. 9.)

⑤ 실무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, 관련분야의 교직원,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위원으로 한다.(개정 2020. 9. 8.)

⑥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⑦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할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8조 (회의의 소집)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 9조 (의결)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② 의결은 원칙적으로 출석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, 예외적으로 위원 중 정당한 사유로 의결에 출석할 수 없을 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전자메일 등의 전자통신수단을 통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한다.

제10조 (회의록 작성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.

제 4 장 보 칙

제11조 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 (폐지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전산정보원 운영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 월 3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(경과조치) 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개정(2010.9.15 시행)에 따라 정보관리처 전산운영팀을 전산정보원 전산운영팀으로 정보관리처장을 전산정보원장으로 일괄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2. 28)

제1조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'기획처'를 '대외협력실'로 한다.

부 칙(2018. 12. 12)

제1조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'대외협력실'을 '기획처'로 한다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2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9. 8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1. 3. 9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